

1. 이리동북초등학교 규칙 일반규정

제정 2002.03.01. 이리동북초 제520
개정 2003.02.17. 관리 제471호
개정 2005.03.30. 이리동북초 제619호
개정 2005.04.13. 이리동북초 제808호
개정 2006.03.07. 관리 제3127호
개정 2006.04.17. 관리 제5375호
개정 2009.04.03.
개정 2011.04.11.
개정 2011.07.11.
개정 2012.02.14.
개정 2013.11.21.
개정 2016.04.14.
개정 2018.10.10.
개정 2019.12.10.
개정 2021.02.17.
개정 2022.09.14.
개정 2023.04.24.
개정 2023.12.14.
개정 2024.04.12.
개정 2024.12.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아래 ‘학칙’ 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이리동북초등학교” 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90-3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와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과 학기 중, 학기말 휴가
3. 개교기념일 : 5월 1일(변경)
4.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
5. 학교장 재량 휴업일

②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3장 수업일수, 평가, 수료인정, 수료와 졸업

제8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데,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1조 (수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2조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졸

업장을 준다.

제4장 취학, 졸업(조기진급 및 졸업)

제13조 (취학) 이리동북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본교 학구 내에 거주하는 자로 시, 동장이 다음해 3월1일에 그 연령이 취학의 시기에 달하는 자(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자를 제외한다)로 취학 아동명부를 작성하여 통보한 대상자로 한다.

제14조 (학교변경 및 취학 의무 유예)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로 지정된 학교 이외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킬 때에는 학교장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동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취학 유예자는 취학 유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유예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재외 국민 등의 자녀의 취학 절차)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하는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92조, 제93조 및 9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만 5세 아동의 취학) 만 5세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용능력 시설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다.

제17조 (취학 통보, 취학독려, 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과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8조 (조기 진급 및 졸업)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위하여 조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 인정을 받은 아동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하게 된다.

제19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의 선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방침

1. 초등학교에서 지적 학문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특수 재능아를 발굴,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3.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 또는 개발하여 운영한다.
4.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판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5.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6. 특수 재능과 인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인적 발달에 힘쓴다.
7. 특수 재능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8.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③ (조기 진급의 범위)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각 급 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기 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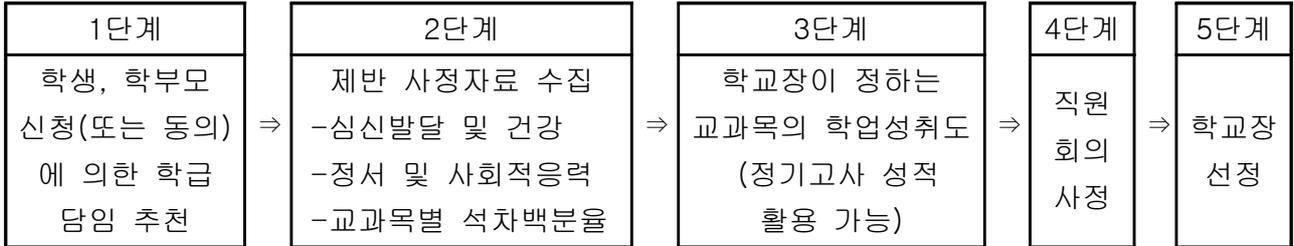
④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중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선정 절차
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 교사의 추천

- 나. 개인 지능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 다.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정기고사 성적 활용 가능)
- 라. 교직원 회의 사정
- 마. 학교장 선정

< 대상자 선정 절차 >



4. 선정 기준

- 가.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자
- 나. 국어, 수학, 과학, 영어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수’ 이거나 수학, 과학, 영어, 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우’ 이상인 자로서 교육부 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공인된 전국 규모의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등 <개정 2013.11.21.>
- 다. 상급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교장이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⑥ 선정 방법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업 성취도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개인 지능검사,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⑦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 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
2.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
3. 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전문개정 2006.03.07]

[본조신설 2005.04.13]

제2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교감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부장, 각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기준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실기평가, 면접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기 이수인정을 받아야 할 교과목)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는 차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 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기

-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 2.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 1.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4.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 1. 학교장은 차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조기 진급자나 조기 졸업자를 선정한다.
- 2.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의 사정을 거쳐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

⑧ 조기 진급자의 환원 조치

- 1.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고, 환원 조치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 2. 학교장은 환원 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부장교사 회의 자문을 받는다.

⑨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성적처리)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 사무는 대상자의 현 소속 학급담임이 관리한다.<개정 2013.11.21.>

⑩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력 인정

- 1.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한 자는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2. 기 진급 및 조기 졸업학생은 학적 사항,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 란에, 2학년→졸업이면 3학년 란에)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입력한다.

제5장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제21조 (교육과정 구성 방향) 본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제22조 (편제와 수업 시수) ① 교육과정은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② 본교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와 여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단,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기준시수는 준수), 학년군별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다만 1,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제23조 (평가) 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별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과 평가는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 등 수행평가위주로 평가하며 학생의 활동상황과 특징, 진보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며 학급경영록 또는 성적보조부 등에 누가 기록해 둔다.

제6장 학생포상과 학생 징계

제24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 연간 30

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를 시킨다.
- ⑦ 수업방해,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회를 열어 학생징계 및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⑧ 학교폭력의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체험학습 운영

제26조 (체험학습 운영)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 ⑤ 체험학습(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되 이 외의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 지침에 따른다.
 -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3.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⑥ 체험학습 신청절차
 -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

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제8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7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제28조 (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서 결정한다.

제29조 (재취학·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거 정원의 관리중인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한다.

제30조 (전학) ①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서)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받아 전학시킬 수 있다.

제31조 (취학유예 및 면제)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은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⑥ 학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 교육장 등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⑦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유예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나 제20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리동북초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리동북초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이 조에서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리동북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출결석 처리

제34조 (출결석 처리)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학교장 사전결재 시)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⑥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수업이 어려운 경우 월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진단서나 학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⑦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학생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⑧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다.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한다.

제35조 (출석정지) 학교장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그 우려가 있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그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 결석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37조 (그 외 출결석 처리 및 출결석 처리의 변경 사항) 그 외의 출결석 처리 및 변경 사항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0장 학부모 부담경비

제38조 (학부모 부담경비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②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학부모부담경비 체납 시에는 체납자 보호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39조 (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1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2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4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3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

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3장 학칙개정 절차 등

제4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이리동북초등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이리동북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개정안 제출·발의) 학교장은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2. 학생회(어린이회)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3.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 또는 변경으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6조(개정안 의결·공포) ① 심의위원회는 학칙 개정안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결된 학칙 개정안을 학교장에게 보낸다.
③ 학교장은 개정 학칙을 지체없이 공포한다.

제14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47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